

담양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담양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5. 10.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관정에 대하여 해당 수리계 조직 등 조례 적용을 일일 지하수 채수량이 150톤을 초과하는 관정으로 한정함으로써 농가의 관정 설치 및 운영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제1호)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정을 일일 지하수 채수량이 150톤을 초과하는 관정으로 정의함.

4.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0. ~ 5. 17.(7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5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이 150톤을 초과하는 관정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이 150톤을 초과하는 관정을 말한다.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